

# 목 차

정 관 .....	1
-----------	---

# 정 관

## 제1장 총 칙

###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퓨릿(이하 “회사”라 칭한다) (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Purit Co., Ltd. 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3. 이온정제유 제조업
4. 감압정제유 제조업
5. 각종윤활유 제조업
6.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7. 공업용주정 소매업
8. 반도체 및 전자재료 관련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9. 부동산 임대업
10. 전 각호와 관련된 제품 및 상품 판매
11. 사무 및 기술 용역서비스업
12.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purit.co.kr>)에 한다. 다만, 전상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제8조의 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본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단,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 중에서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1조 (주식의 발행가격)**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또는 액면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 **제13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4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의 2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15조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 채

**제17조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회사)** 사채모집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 (전환사채)** ① 본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⑥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본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4조의2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 준용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장 주주총회

**제22조 (소집시기)** ① 본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23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주주총회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의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이사회

**제34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근 이사(비상근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37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가 본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궐선임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들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38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사회는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 제39조 (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는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회장 또는 부회장은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④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0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6조(위원회)** ① 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내부통제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1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내지 제44조(이사회 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1 (위원회 설치)** ① 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내부거래위원회

② 제1항 제1호의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두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상담역 및 고문)**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제6장 감사**

**제48조 (감사의 수)** ① 본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9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 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0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51조 (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40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3조 (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제7장 회 계

**제55조 (사업년도)** 본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6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당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
6. (삭제)

**제59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60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는 때에는 당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한다.
-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8장 기타

**제61조 (업무규정)** 본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62조 (규정의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  
령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설립연월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  
지로 한다.

### 부 칙(22.09.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9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단서조  
항, 제8조의 2, 제14조 제3항 단서조항, 제14조의2 제4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  
제21조 단서조항, 제21조의 2 개정 규정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 제49조 제3항 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 제49조 제4항 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 칙(23.02.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2월 0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부 칙(23.03.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3월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부 칙(23.08.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8월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